

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어식 용어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안

(정진술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185
----------	------

발 의 년 월 일 : 2021년 02월 05일
발 의 자 : 정진술 의원(1명)
찬 성 자 : 고병국, 권영희, 김화숙,
문병훈, 박순규, 이세열,
이승미, 이은주, 임종국,
전병주, 최 선 의원(11
명)

1. 제안이유

- 자치법규에 대한 서울특별시 시민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고, 우리 말의 올바른 쓰임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일부 조례에 남아있는 어렵고 어색한 일본어식 한자어의 표현을 일괄정비함으로써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 또는 통용되는 한자어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에 쓰이는 대표적 일본식 한자어의 표현인 “가필”, “감안”, “개호” 등의 ‘일본어 한자어 총 50개의 대하여 각각 “고쳐씀”, “고려”, “간병” 등의 표현으로 순화함

3. 참고사항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어식 용어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안

제1조(「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5호 중 “감안”을 “고려”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감안”을 “고려”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단서, 제13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30조제2항 단서 중 “감안”을 각각 “고려”로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감안”을 “고려”로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 차량정비센터 정비수가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차

량정비센터 정비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노임”을 “임금”으로 한다.

제6조(「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 등의 건립 및 설치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 등의 건립 및 설치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3조제1항 및 제5항 본문 중 “명기하도록”을 각각 “명확하게 적도록”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명기하여”를 “명확하게 적어”로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명기하는”을 각각 “명확하게 적는”으로 하고, 제3조제5항 단서 중 “명기할”을 “명확하게 적을”로 한다.

제7조(「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호 중 “명기”를 “명확하게 적을 것”으로 한다.

제8조(「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후단 중 “명기하여야”를 “명확하게 적어야”로 한다.

제9조(「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감안”을 “고려”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명기한다”를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로 한다.

제10조(「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제10조제6항 및 제11조제8항 중 “입회”를 각각 “참관”으로 한다.

제5조 중 “입회를”을 “참관을”로 한다.

제11조(「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중 “입회를”을 “참관을”로, “입회”를 “참관”으로 한다.

제12조(「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4제6항 중 “지불”을 각각 “지급”으로 한다.

제20조 본문 중 “노임”을 “임금”으로 한다.

제13조(「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지불”을 “지급”으로 한다.

제14조(「서울특별시 도로보수 건설기계 운영·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로보수 건설기계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지불”을 “지급”으로 한다.

제15조(「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라목 중 “지불”을 “지급”으로 한다.

제16조(「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지불”을 각각 “납부”로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 중 “감안”을 각각 “고려”로 한다.

제17조(「서울특별시 주거안전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주거안전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 중 “지불”을 “지급”으로 한다.

제18조(「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감안”을 “고려”로 한다.

제7조제1항제12호 중 “지불”을 각각 “납부”로 한다.

제19조(「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지불”을 각각 “납부”로 한다.

제20조(「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8조제7호 중 “하청”을 “하도급”으로 한다.

제21조(「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제1호 중 “감안”을 “고려”로 한다.

제69조제2호 중 “노임”을 “임금”으로 한다.

제73조제2항, 제83조제1항 중 “입회”를 각각 “참관”으로 한다.

제84조제1항 중 “입회자”를 “참관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입회자
가”를 “참관인이”로 한다.

제83조의 제목“(물품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를“(물품검사 또
는 검수자의 지정 및 참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